

# 한국모태펀드 2017년 3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7년도 한국모태펀드 3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개요

###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8,700억원 내외 (청년 3,300억원, 중진 5,000억원, 지방 200억원, 중진특허협력 200억원)	
기본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li> <li>·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의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li> </ul>	
출자 대상 및 신청 자격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투자회사</li> <li>·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li> <li>· 산기술사업금융업자</li> </ul>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상동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2017년 8월 16일(수), 14:00	
조합 결성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li> <li>·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청년, 중진, 지방계정은 2개월, 그 외 계정은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li> </ul>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 선정 가능

(단위 : 억원)

분 야		모태펀드 출자 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청 년	청년창업	3,300	5,500	60%
중 진	재기지원	2,500	3,125	80%
	4차 산업혁명	2,500	3,572	70%
	소 계	5,000	6,697	
지 방	지방기업	200	334	60%
중진특허협력	지식재산권	200	334	60%
합 계		8,700	12,865	

## 3.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계 정	분 야	조합 형태	중점지원 해당여부
청 년	청년창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중 진	재기지원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4차 산업혁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지 방	지방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중진특허협력	지식재산권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 4.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청년	청년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투자 당시 다음 ①, ②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재창업자 포함)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신주 투자와 병행하여 지분 관계 정리 목적 등으로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 투자 총액의 10% 이내에서 주목적 투자로 인정</li> <li>①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li> <li>②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ul>
중진	재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신주 투자와 병행하여 지분 관계 정리 목적 등으로 구주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 투자 총액의 10% 이내에서 주목적 투자로 인정</li> <li>①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이상)였던 자가 재창업(타인 명의의 재창업** 포함)한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이상) 또는 CTO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li> <li>*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이 있고, 폐업의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li> <li>** 타인 명의로 재창업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li> <li>②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 포함)</li> <li>***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용 프로그램, 중기청의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재도전 성공 패키지, 맞춤형 재도전 지원 등</li> <li>③ 대표이사가 기업경영을 위해 연대보증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용자를 받은 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일정기준 이상 연체되고 연대보증 해소 또는 용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중소기업. 단, 투자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연대보증 또는 용자 실적이 있어야 함</li> </ul>
	4차 산업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①, ②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① 투자 금액의 50% 이상을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연구개발비, 양산설비구축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기업</li> <li>②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매출이 총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li>* 예시 : 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신성장정책금융센터, 2017. 4. 25.) 등을 참고하여 운용사가 자유롭게 제안 가능 ( 향후'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등 정부에서 지정하는 산업 분야로 조정 가능 )</li> </ul>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지방	지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펀드 투자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ul>
중진 특허 협력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80%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 특허에 대한 IP 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외). 단, 최초 투자 당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sup>주1)</sup> 또는 해외 출원특허 보유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산업재산권 정보의 분석·제공·DB구축,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자문, 특허기술 사업화 관련 전문 컨설팅 등</li> <li>**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또는 직접매입</li> <li>*** 해외 주요 4개국(미, 중, 일, EU) 중 하나 이상의 특허청에 이미 출원했거나, 투자 후 2년 이내 출원할 특허를 보유한 기업</li> </ul>

주1)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란, ① 창업지원법상 창업자(재창업자 포함) 중 업력이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② 창업자(재창업자 포함)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을 말함

※ 청년창업, 지식재산권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제안 내용을 규약에 반영(예 : CB/BW/RCPS 방식 투자 시, YTM 3% 이하로 적용 등)

##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청 년	중 진	지 방	중진특허 협력
청년창업 등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	○
신청 자조합 특성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동일한 분야 투자한 경우	○	○	○	○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시된 평가)	○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 확정으로 신속한 펀드 결성이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자조합 운용사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조합을 해산하고, 자조합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	○	○	○
조합 존속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	○	○
결성목표액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	○	○	○	○
운용 중 조합의 투자소진율이 높은 경우	○	○	○	○
해당분야 투자인력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
성공한 선배기업이 설립한 신설창투자인 경우	○	○	○	○
약정총액의 15% 이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지역 금융기관 등 출자 참여. 단, 수도권 지역은 제외(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본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운용사인 경우	○	○	○	○
각 출자 분야 주목적(예: 청년창업, 재기지원)의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		○

##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10배
  - ② 자기자본의 5배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 중인 조합의 투자예정자산(약정금액의 80% - 기투자 금액)의 합이 전문인력\* 1인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 전문인력의 인정 기준은 각 투자조합의 소관 법령에 따름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단, ②, ③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 포함 각각 2명, 3명으로 제안 후 펀드 결성 시점까지 1명을 충원하여 구성 가능(충원하는 인력은 결성시점 기준으로 선정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총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 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총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1,000\text{억원}$

3. 기존조합의 신규조합 참여제한 규약 관련
- 신청조합 핵심인력이 신청자조합을 포함하여 상기 투자조합 운용 한도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조합 규약에 핵심인력의 동(同) 신규조합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 이하 및 평가 보류된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접수 마감 되는 출자사업부터 적용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접수 마감 되는 출자사업부터 적용

###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추가 증액 방식을 통해 우선 결성한 조합은 예외로 함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인 경우
  - 라.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바. 핵심인력(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사.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 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취소 조건 중 가. 결성 규모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추가 증액 방식을 통해 우선 결성하였으나,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 조합 결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모태펀드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금액이 선정 시 우대받았던 출자유치 제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제한

### Ⅲ.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li> </ul>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 충당을 하지 않음</li> <li>○ 단, 다음의 경우는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기업, 지식재산권 분야</li> <li>2) 중진(4차산업 혁명 분야)에 민간 출자자(공제회, 연기금 등)가 신규로 출자에 참여하거나 모태펀드와 협력하여 출자할 경우</li> </ol> </li> <li>*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등은 우선손실충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li> <li>** 2)의 경우 수익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모태펀드가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음</li> </ul>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li> <li>○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공고문 상 최대 출자비율 보다 낮아질 경우, 투자 의무 비율 하향 조정 가능</li> <li>○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li> </ul>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에 따라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안서 접수마감일기준)에 신규 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 의사록 등 관련한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 (예 : 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li> </ul>
추가 증액 방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결성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최초 결성액이 최소 결성 규모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결성 가능</li> <li>○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조합 규약(안),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li> </ul>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li> </ul>
자조합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속기간 5년 이상, 투자기간 4년 이내</li> </ul>

항 목	내 용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청년/중진/지방/중진특허협력 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 : 매 회계연도말 아래 관리보수 지급기준 중 선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or</li> <li>② 투자잔액(분기말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0.5%이내)</li> </ul> </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li> </ul> </li>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300억원 이하: 2.5%이내 / 30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 2.3%이내 / 600억원초과: 2.1%이내  (단, 재기지원 분야는 300억원 이하 : 3% 이내 / 3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 2.5%이내 / 600억원초과 : 2.3% 이내 적용)</li> <li>* 다음의 경우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식재산권</li> <li>- 성공한 선배기업이 설립한 신설창투자(시가총액 800억원 이상 상장사 또는 최근 연도 말 기준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대주주인 경우)</li> <li>- 지역기반 운용사(수도권 이외 지역에 본점 소재)</li> </ul> </li> <li>*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 보통주(중진특허협력 계정의 경우 IP 직접 매입 또는 IP 프로젝트 포함)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잔액 계산시 120%로 가중치 부여 가능</li> </ul>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식재산권 : 0% 이상</li> <li>* 모태펀드 출자지분(콜옵션 대상 지분 제외)에 대해 기준수익률 0% 적용</li> <li>○ 4차 산업혁명, 지방기업 : 3% 이상</li> <li>* 모태펀드 출자지분(콜옵션 대상 지분 제외)에 대해 기준수익률 3% 적용 가능</li> </ul>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li> <li>○ 기준수익률 이상의 IRR을 달성한 경우, 계단식으로 기준수익률 하향 조정 가능(단,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이 0%인 조합 제외)</li> <li>* 예) 청산조합 IRR이 12% 초과, 17% 이하인 경우 : 기준수익률을 1%p. 하향 적용  청산조합 IRR이 17% 초과, 22% 이하인 경우 : 기준수익률을 2%p. 하향 적용  청산조합 IRR이 22% 초과하는 경우 : 기준수익률을 3%p. 하향 적용</li> </ul>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가 수령한 전체수익이 IRR 5%를 초과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단, 4차 산업혁명, 지방 분야는 적용 제외</li> <li>○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단, 지식재산권 분야는 적용 제외</li> <li>○ 전체 투자금액 대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주 보통주(중진특허협력 계정의 경우 IP 직접 매입 또는 IP프로젝트 포함)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li> </ul>

항 목	내 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math display="block">\text{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times \text{Max} \left[ \left( 10\% \times \frac{\text{신주 보통주 투자비율} - 40\%}{60\%} \right), 0 \right]</math>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투자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지식재산권 분야 제외)</li> <li>※ 추가 인센티브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의 합계는, 청년창업, 지식재산권 분야는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25%, 그 외 분야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콜옵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기업, 지식재산권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모태펀드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콜옵션 부여.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li> <li>* 행사 가격 : 해당 지분 원금에 일정 수준 복리 이자 합산 금액</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math display="block">\text{원금} * (1 + \text{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text{경과기간}}</math>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 기간 :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수탁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li> <li>○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상품에 운용 가능</li> <li>○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회계감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ER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P 사용 의무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단, 지식재산권 분야는 적용 제외</li> <li>○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의 경우 타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예외 적용 가능</li> <li>○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li> </ul>

####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4차산업혁명 분야) 전문가 자문단 PT\* → 2차 심의 → 최종 선정

\*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청 운용사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에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자문단에게 투자분야에 대한 PT후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심의 이전에 투자분야를 수정할 수 있음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7. 8. 16.(수)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7. 9월말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17. 12월말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선택 가능

가.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 1.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나. 온라인 접수 : 신청 매뉴얼(붙임 2.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제안서 제본 3부 및 USB 메모리 별도 송부)

<http://install.k-vic.co.kr>

- 접수 마감일

가. 현장 접수 : 2017. 8. 16.(수) 14:00

나. 온라인 접수 : 2017. 8. 16.(수) 10:00

- \* 온라인 접수는 공고시부터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는 24시간 접수하나, 접수 마감일은 10:00까지만 접수
- \* 온라인 접수시 제안서 제본 3부 및 USB메모리는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 필요 없음)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7. 7. 28.(금) 14:00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지하 1층
- 문의 방법  
가. 청년, 중진, 지방, 중진특허협력계정 : 02-2156-2025, fof@k-vic.co.kr  
나.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7. 7. 25.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대표이사/주주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대주주의 변동 횟수, 자기 자본 순이익률, 대표이사 업계 경력
	재무안정성	자본충실도, 총자산 수익률
	조합운용실적	청산조합 수익률, 모태펀드 자펀드 평가수익률
	투자실적	최근 결성 조합의 약정총액 대비 누적 투자금액, 창업자 투자 비율, 전문인력당 평균 미투자잔액
	준법성	최근 법규 등 위반 내용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평균),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최근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및 투자 기업수
	팀웍 및 관리능력	대편/참여인력이 팀으로 함께 근무한 기간(평균), 핵심 인력 중도이직 및 근속기간(평균),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전담인력 존재 여부
가점 등	공고문 Ⅱ-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창투사 이외의 운용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